제 192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

자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』檢討報告書



2015. 12. 9.

社會建設委員會專門委員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』

檢討報告

1. 경 과

의안 제104호로 2015년 11월 17일 권영식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노인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으며 사회의 원로로서 존경받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의 가장 중요한 활동과 생활의 공간인 경로당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지원계획 수립 및 경로당 실태조사(안 제5조, 제11조)
- 나. 운영비 및 교육·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지원(안 제6조)
- 다. 경로당 보조금 정산 및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도·감독 실시(안 제7조, 제8조)
- 라. 결연사업 및 안전점검 실시(안 제9조, 제10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근거

- 「노인복지법」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, 제36조(노인여가복지시설), 제47조(비용의 보조)
- 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제25조(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) 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.
- 다. 입법예고 (2015. 11. 9 ~ 11. 16) 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노인의 복지증진에 있어서 접근성과 이용 빈도에서 가장 중요한 노인 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해 체계적인 운영관리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임.

○ 주요 내용을 보면

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지원계획에는 운영비 등 지원 사항,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,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두었고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중식 지원용 양곡, 냉·난방비 및 교육·여가 프로그램 지원, 물품 및 시설 유지관리 등을 시설 규모와 이용인원 및 시설형태,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게 하였으며

경로당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실태를 지도·감독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하여 매분기 구지회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「노인복지법」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운영비를 환수하거나 지원을 축소하는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게 규정하였음.

- 본 조례안은 노인여가 복지시설 중 가장 대중적인 경로당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하여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모하고자 하는 상위법령의 목적에 맞게 제정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 - 다만 그동안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여 온 노인세대에 대해 앞으로는 단순한 경로당 지원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관 련 법 령

■ 『노인복지법』

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-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<u>제2조</u>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6조(노인여가복지시설)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. <개정 2007.8.3.>

- 1. 노인복지관 : 노인의 교양·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,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·재가복지,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- 2. 경로당 :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·취미활동·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- 3. 노인교실 :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·노인건강유지·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 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- 4. 삭제 <2011.6.7.>
- ②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2.29., 2010.1.18.>

제37조(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-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·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6.7.>
- ④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,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

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1999.2.8., 2008.2.29., 2010.1.18., 2011.6.7.>

제37조의2(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<u>「양곡관리법」</u>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2.2.1.]

제47조(비용의 보조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<u>대통령령이 정하는</u>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■ 『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』

제25조(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) ①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 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 신고서(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2.12.20., 2005.6.8., 2005.10.17., 2006.7.3., 2008.1.28., 2010.9.1., 2015.1.16.>

- 1.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
- 2. 위치도·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(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다)
- 3.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(경로당을 제외한다)
- 4. 사업계획서 1부(경로당은 제외한다)
- 5.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,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) 각 1부
- 6. <u>「전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38조제3항</u>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(경로당은 제외한다)
-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전자정 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

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·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. <신설 2006.7.3., 2008.1.28., 2010.2.24., 2010.9.1.>

③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<개정 1999.8.25., 2006.7.3., 2008.1.28.>